제316회 서산시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

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(회계과소관) [의안번호 제77호]

2026. 10.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〈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〉

검 토 보 고 서

Ⅰ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제77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제출일자 : 2026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13일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「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①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 (경로장애인과 소관)

- 취득재산 : 토지(일반회계) - 6,203㎡(433,976천원)

Ⅲ. 세부사업별 검토의견

■ 총 괄

○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○ 금번 제출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1개의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 4건 6,203㎡임

■ 사업별 검토

1.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

가. 사업의 필요성

- 희망공원은 봉안당 신축 및 자연장 안치 증가 등으로 이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

- 설·추석 등 명절시기에 추모객이 집중되어 기존 주차장으로는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

- 장사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 부족은 집입도로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

- 따라서 희망공원과 연접한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장사시설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고 추모객이 집중되는 시기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나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서산시 희망공원 연접토지 매입
○ 위　　치 :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26 외 3필지
○ 면　　적 : 6,203㎡
○ 소요예산 : 450,000천원, 부대비용 포함
○ 활용계획 :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등 공공편의시설 설치 및 추모객 편의 제공
○ 취득대상 재산(토지)

(단위 : 천원, ㎡)

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비용 (추정가격)	비고
계		6,203	78,023	433,976	
인지면 산동리 산26	임야	1,983	15,805	128,895	
인지면 산동리 산27	임야	2,760	21,776	179,400	
인지면 산동리 575-4	전	643	17,811	57,870	
인지면 산동리 575-5	전	817	22,631	67,811	

다. 검토의견

- 본 승인안은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,「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

-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서산시 희망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(안))은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26, 산27, 575-4, 575-5번지 총 4필지 6,203㎡의 부지를 매입하여 추가적인 주차면수 및 쉼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- 총 소요예산 4억5천만원의 재원은 시비 100%로 충당할 계획임

- 현재 희망공원은 봉안당 증축으로 인해 추모객이 증가하였고 성묘객이 몰리는 설·추석 등 명절기간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혼잡 및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

- 이에 연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편의시설(주차장, 쉼터 등)을 확충하여 시민친화공간으로 추모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임

-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산시 희망공원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【별첨 1 : 위치 및 사진현황】

(단위 : ㎡, 천원)

대상지	소재지	인지면 산동리 산26 외 3필지	지목	임야 전	면적	6,203
	용도	공공편의시설 조성	기준가격		78,023	



【별첨 2 : 관련법령】

《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》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

《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》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《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》
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(이하

"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